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86

발의연월일: 2021. 7. 28.

발 의 자:김도읍·김태흠·윤한홍

태영호 • 권영세 • 이헌승

추경호 · 양금희 · 조수진

신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를 미성년으로 한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 또는 제매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자녀의 기준을 미성년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2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전단 중 "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"를 "자녀는 2 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"로, "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"을 "2 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성년이 된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보상금) ① (생 략)	제12조(보상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	2
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	
<u>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</u> , 대	<u>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</u>
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	<u>정하되</u>
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	
가 <u>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</u>	<u>25</u>
<u>인</u>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.	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	
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	
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	
에도 또한 같다. <u><단서 신설></u>	
	<u>다</u>
	만, 성년이 된 자녀가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인정
	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아
	<u>니한다.</u>